

제587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태봉로 확장공사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 심 사 일 : 2013. 5. 22.
- 사업개요
 - 용역비 : 18,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사업규모 : 태봉로(시도) 확장구간(B=20m→30m, L=120m) 교통소통대책 수립
- 심사결과 : 적 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도로공사 설계 과업범위에 공사중 교통처리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태봉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당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용역수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해당 용역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보완설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각종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됨. <p style="color: blue;">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p>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계획 자체품셈(한국교통기술사협회, 2012. 9)에 의해 과다 산출된 투입인력은 적정인원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술사 · 보조원 투입인원 제외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기술사 투입비율 조정 - 직접경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교통량 조사 : 4개소→1개소 <p style="color: blue;">∴ 용역비 조정 18,000천원→8,300천원(감9,700천원, 53.9%)</p>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면·중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